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26호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다.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대행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서비스 등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함(안 제9조)
- 바.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등에 비용을 지원함(안 제10조)
- 사.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insuk33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1
----------	-----

발의연월일 : 2013. 6. 14.
발 의 자 : 신동수·박승희
박순남·안영수 의원
(찬성자 4인)

1. 제안이유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
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다.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대행을 규정함(안 제7
조)
- 라.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서비스 등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
(안 제8조)

- 마.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함(안 제9조)
- 바.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등에 비용을 지원함(안 제10조)
- 사.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3)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할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인천광역시 노숙인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숙인 분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9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

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인권의 보장) 시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

제3조(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임 및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5.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
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3조(기능)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4. 노숙인시설의 설치·확보 및 주거지원·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및 의결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의 기본 계획과 중요사업·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건의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
4.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2-12]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제7조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가.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 출석수당 예상액 : 15명 × 70,000원 × 4회 = 4,200,000원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출석수당을 준용함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신 동 수 의원